



## 국제인증수유상담가® (IBCLC®) 자격증 소지자 업무 범위

국제인증수유상담가 (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 IBCLC®) 자격증 소지자는 모유수유 (모유 영양 섭식) 그리고 모유 생성 분비에 대한 특화된 지식과 임상 전문 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IBLCE®)에서 그 자격을 인증 받는 자이다.

이 업무 범위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 받고 그래서 종사할 권한이 있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이 업무 범위의 목적은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들이 안전하며 만족할 만한 그리고 근거에 입각한 관리를 제공할 것을 증진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자격이므로, 이 업무 범위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어떠한 국가나 여건에서도 적용된다.

- I.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전문직의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전문직 행위 규약 그리고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업무에 대한 임상 적격에서 정의된 범위 안에서 일함.
  2. 모유수유 가정을 보살필 때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시험 청사진에 정의된 학과들에 입각한 지식과 근거를 통합함.
  3. 각각의 지정학적 지역 또는 환경의 법적 체제 안에서 일함.
  4. 정기적인보수교육을통하여지식과기술을유지함.
  
- II.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모유수유를 보호, 증진,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영·유아 영양 및 섭식의 표준인 모유수유의 대변자로서 활동함.
  2. 임신 전부터 이유까지, 가족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능숙한 모유수유 지지 및 관리를 제공함.
  3. 모유수유 가족, 보건전문가 및 지역사회에게 모유수유 그리고 모유 생성 분비에 관하여

교육함.

4. 모유수유를 보호, 증진, 지지하는 정책 개발을 도모함.

**III.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어머니 및 가족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 모유수유의 맥락에서 부모와 아이의 건강 및 정신적 상태를 확인함.
2. 모유 수유 및 모유 분비와 관련하여 모성(어머니), 영·유아 및 수유(영양 섭식)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함.
3. 의뢰인과 상담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수유(영양 섭식)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함.
4. 모유수유 및 모유 분비 기간 중 약물복용(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및 음주, 흡연, 마약 복용, 약초 또는 보충제,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모유생성 및 수유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에 관하여 증거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함.
5. 모유 생성 및 분비 기간 동안 보조 및 대체요법 그리고 그로 인한 모유생성 및 아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증거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함.
6. 모유수유의 문화적, 정신사회학적 및 영양학적인 측면들을 통합함.
7. 모유수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함.
8. 의뢰인 및 보건의료 팀원을 대할 때에 효과적인 상담 기법을 활용함.
9. 의뢰인과 협력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 중심 관리 원칙을 사용함.
10. 의뢰인, 보건의료인 및 공동체 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성인 교육 원칙을 사용함.

**IV.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수유모 및/또는 아기의 주치의 그리고 보건 관리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정직하고 완벽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1.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관련 정보를 모두 정직하고 완벽하게 기록하고, 적절한 경우, 기록을 지역 관할권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보관함.
2. 필요에 따라 의뢰인의 주요 보건의료인, 보건 시스템 및/또는 적절한 복지서비스에 정직하고 완벽하게 보고함.

**V.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의뢰인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1. 어머니 및 가족에 대한 사생활 및 존엄성, 기밀성을 존중함.

**VI.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diligence)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

1. 증거에 입각한 그리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는 정보를 제공함.
2. 필요한 경우 후속 서비스를 제공함.

3. 다른 보건의료인 및 지역사회 지원 단체에 필요한 의뢰를 함.
4. 조화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팀의 다른 구성원과 공동으로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일함.
5. 본인의 국가 또는 본인이 종사하는 관할권의 형법에 따라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보고함.
6. 다른 전문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보고함.
7.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경우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보고함.